

수원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18678(본소), 2021나18685(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신동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류지원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1. 19.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8. 선고 2018가합407032(본소),

2019가합404733(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표시 중 “B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B”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86,402,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20. 7.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9,2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지체상금 청구(233,762,100원)와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청구(352,639,958원)를 병합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변경 및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중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본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중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심판범위에서 제외한 본소 중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의 “아래 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8면 제4행, 제9면 제10행의 각 “위 표”를 “이 사건 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표 아래 제2행의 “감정인 F의” 앞에 “제1심법원 ”을 추가하고, 제8면 제18행과 제9면 제5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감정인은 공사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면서 건설표준품셈에 따른 노무비 단가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하자 없이 시공할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인 점, 하자보수비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이미 완공한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지 않고 위와 같이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 것 역시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추가로 판단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 부분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7. 9.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표 순번 1, 3, 4 하자에 관해서 사설기관에 의뢰하여 그 조사결과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파취조사 및 샘플조사 등이 이루어져 이 사건 공사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하자에 관한 소제기는 위 약정에 따른 부제소합의에 위배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표 순번 1 하자에 관하여

1) 부제소합의 여부

가)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과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L 등이 2017. 9. 6. 피고의 현장대리인 M 등과의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서 이 사건 표 순번 1 하자에 관해서 토의한 결과 10건의 샘플을 채취하여 관련기관에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회의의 결정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에는 이 부분 하자와 관련하여 ‘3.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샘플 채취 건’, ‘관련기관의 결과

에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표 순번 1 하자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포기 여부는 원고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었던 점(감정결과에 의하면 보수비용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른다), ② 이 사건 회의록에 이 사건 표 순번 1 하자에 관한 소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의록 중 ‘관련기관의 결과에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원고는 회신 결과를 한 번 받아보기로 한 것일 뿐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또한 소송 초기인 2018. 11. 9. 이 사건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한 이후로 2022. 1. 14.까지는 위 문언이 부제소합의를 의미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의록에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여부

이 사건 회의록에 ‘관련기관의 결과에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함’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7.경 G(주)에 원고와 피고가 채취한 샘플의 두께 측정을 의뢰하였는데, 2017. 9. 8.경 ‘샘플의 평균 두께가 대략 3mm 이상 나오는 것으로 측정되어 적정 수준이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 증인 N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한 N은 위 문구에 대해서 ‘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참석자들이 수긍은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문제제기할 사람은 할 것이었다. 유동적인 의미였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에 구속될 의사가 명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감정인은 원고와 피고가 선정한 샘플을 직접 채취하고, 바탕면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두께를 측정하고 결과 평균값이 3mm에 미달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합리성 있는 전문적 의견인 점, ③ 원고가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향후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조사방법에 의해 하자 여부가 밝혀질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인데, G(주)가 산정한 두께 평균값의 경우 샘플을 채취한 위치와 불순물 제거 여부 등의 측면에서 측정 결과의 적정성을 담보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G(주)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가 합리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위 소견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표 순번 3, 4 하자에 관하여

원고가 위 각 하자에 대해서 피고와 사이에 사설기관의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표 순번 3 하자(회의록에서는 ‘2. 무늬코트 코팅 건’로 칭하고 있다)에 대해서 기술진에 의뢰하여 확인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부제소합의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피고 표시 중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의 오타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나 청, 판사 류희상